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인·적성검사를 종합적성검사로 변경함과 동시에 채용시험 단계에 추가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인성과 직무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응시자격요건에 근무경력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5조)

- 1)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은 자격증 소지만을 규정하고 있어 시행규칙에서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근무경력 기준에 대한 위임근거 미비
- 2) 응시자격요건에서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근무 경력을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나. 종합적성검사 신규 도입 및 적성검사 의무화를 위해 시험단계에 도입

- 1)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현행 인·적성검사를 종합적성검사로 변경(안 제36조)

- 2) 시험단계에 종합적성검사를 도입하여 응시자가 시험에 미응시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7조)

다. 소방공무원 직무특성을 반영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정(안 제46조)

- 1)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시 접할 수 있는 재난상황을 제시하고 수험생이 대안을 마련하는 등 직무역량을 반영한 면접시험 운영
- 2) 수험생 역량수준을 능력측면과 인성측면을 구분하고 평정항목을 환경변화에 맞게 구성하여 직무특성에 맞는 인재선발 추진

라.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제도 도입(안 제49조)

- 1)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강화를 위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 까지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마.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른 시험과목 변경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직무 과목 시험대상 계급 확대(별표 3, 별표 5)

- 1) 「소방기본법」이 「소방기본법」과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됨에 따라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 변경
- 2) 소방사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에 적용하고 있는 직무 과목(응급처치학개론, 화학개론, 컴퓨터일반)을 소방교, 소방장 계급까지 확대하여 필기시험 과목을 채용분야별 전문성 검증에 적합한 직무 과목으로 변경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소지한”을 “소지하고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6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제19조제3항 후단 중 “경우 따”를 “경우 따”로 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법 제7조제2항제1호·제4호 및 제5호”를 “법 제7조제2항제1호·제4호”로 한다.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종합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5호(중전의 제4호) 중 “인성 또는 적성검사, 정밀신원 조회”를 “종합적성검사”로 한다.

제3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차시험: 종합적성검사

제37조제1항제6호(중전의 제5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차시험: 면접시험.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와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45조 중 “하며, 소방사”를 “하며, 소방사”로 한다.

제46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제해결 능력
2. 의사소통 능력
3.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
4. 팀워크 및 협업능력
5. 침착성 및 책임관

제49조제4항 중 “수급자 또는”을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로,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험실시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발시험에서 다음”을 “선발시험에서 다음”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각 법률의 하위법령

별표 3 비고 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필수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항공법규, 항공영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응급처치학개론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화학개론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컴퓨터일반
소방장 · 소방교	선택		비행이론, 항공기상,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장비, 항공전자, 항공엔진 중 1과목			

별표 5 비고 제2호가목 및 다목 중 “분야”를 각각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소

방장, 소방교의 구급, 화학, 정보통신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행계획이 공고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분야별 자격증을 <u>소지한</u> 사람이어야 한다. ④ ~ ⑨ (생략) ⑩ 제3항부터 <u>제6항까지</u> ,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근무 또는 연구실적, 소방에 관련된 교육과정, 그 밖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소 지하고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 -----. ④ ~ ⑨ (현행과 같음) ⑩ ----- <u>제5항까지</u> ----- ----- ----- ----- ----- -----.
제19조(신규채용방법) ①·② (생략) ③ 임용권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 제18조에 따른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 (제20조에 따라 그때까지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유예된 사람은	제19조(신규채용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⑥ (생략)

제36조(시험의 방법) ①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 3. (생략)

<신설>

4. 면접시험

인성 또는 적성검사, 정밀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5.·6. (생략)

②·③ (생략)

제37조(시험의 구분등) ①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6조(시험의 방법)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종합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5. -----

종합적성검사 -----

-----.

6.·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시험의 구분등) ① -----

-----.

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사의 경우에는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신설>

5. 제5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3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신체검사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다만,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제2호와 제3호의 방법으로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채용하려는 경우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업무 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2. (생략)

3.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

-----.

1. ~ 4. (현행과 같음)

5. 제5차시험: 종합적성검사

6. 제6차시험: 면접시험.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

--. -----

----- 제2
호-----

-----.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는 서류전형 · 체력시험 및 면접시험.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43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①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
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별표
2와 같다.

② ~ ⑥ (생략)

제45조(출제수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소방위 이상 및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있어서는 소방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소방장 및 소방교에 있어서는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소방사에 있어서는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①·②
(생략)

③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① -----
----- 별표
2-----.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5조(출제수준) -----

하며, 소방사

-----.-----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3.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4. 예의·품행·성실성·봉사성
5.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④ ~ ⑥ (생략)

제49조(응시수수료) ① ~ ③ (생략)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

1. 문제해결 능력
2. 의사소통 능력
3.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
4. 팀워크 및 협업능력
5. 침착성 및 책임관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9조(응시수수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거나 ----- 지원대상자-----

-----.

<신 설>

제51조(부정 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 7. (생략)

② ~ ⑥ (생략)

⑤ 시험실시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부정 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
----- 선발시험에서 다음 -----

-----.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연 락 처	(044) 205 - 7288